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서민우 의원 외 4인
- 제출일자: 2021. 5. 4.
- 회부일자: 2021. 5. 28.
- 검토기간: 2021. 5. 29. ~ 2021. 6. 4.

2. 제정이유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안 제6조)
-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안 제7조, 안 제8조)
- 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9조)
- 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원칙(안 제10조)
- 사.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 ~ 안 제16조)
- 자.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7조)

4.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5. 검토의견

-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하 규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등)’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부응하여 달서구 역시 상기의 아동 권리를 보장할 일련의 구체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1년 4월)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음.
 -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 방향에 부합하는 한편,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아동의 권리’ 하나로 구 차원에서 “놀 권리¹⁾”도 보장(안 제2조제2호)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인 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1항 조문에 대한 집행부 <삭제> 주장에 대해
- 제1항만 삭제하고 제2항 그대로 둔다면, 수정 후 제6조 조 이름(어린이 날 및 어린이주간)포함, 조문 전체 규정방식에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집행부 추가 의견 청취 필요.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제1항 삭제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현행 「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를 존치하는 집행부 입장과는 상충됨. 제1항 삭제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필요.

1)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놀 권리의 포함한다(안 제2조제2호).

상위 법령	달서구 조례
아동복지법 <p>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p>	조례안 <p>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①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간에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어린이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어린이 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단체·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념(공연)행사 2. 어린이의 교육·문화·체육에 관한 행사 3. 어린이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어린이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어린이 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p>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p>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집행부 검토의견서

1. 발의연월일: 2021. 5. 4.

2. 발의자: 서민우의원 등 5명(서민우, 박정환, 조복희, 김화덕, 배지훈)

3. 제안이유

○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안 제 6조)
-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안 제7조, 안 제8조)
- 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9조)
- 바.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원칙(안 제10조)
- 사.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 ~ 안 제16조)
- 자.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7조)

5. 참고사항[관계법령]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와 관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보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재기재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함.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①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삭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재기재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함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생략) <신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보다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활용하여 심의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③(생략)	제13조 (삭제)	
제14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14조 (삭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②(생략)	제15조 (삭제)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②·③·④·⑤(생략)	제16조 (삭제)	

【관 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 ① ~ ② 생략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생략